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6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9일, 장규권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5년 6월 23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며, 재활용 의류 수거함의 근거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2)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3)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4)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5)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삭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상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함

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시행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다)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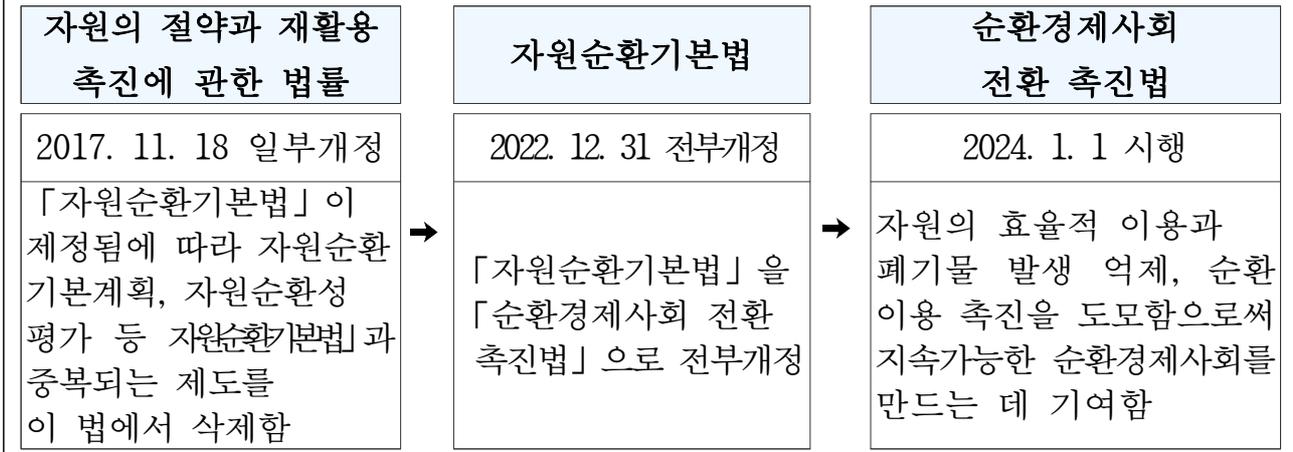
마)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 의견

○ 우리나라 정책 기조 변화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 관계법령의 제·개정 경과



○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